

세부사업명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세목	연구개발 출연금			
내역사업명	-			예산 (백만원)	179,021			
사업목적	과학기술기반의 농업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							
사업 주요내용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농축 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수출전략기 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 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Golden Seed 프로젝트, 농식품수출 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1세대스마트팜산업화기술개 발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항에 명시한 기관 :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지원한도	각 사업별 예산 범위 내(사업 공고 및 RFP 명시)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0	융자	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69,586	176,882	179,021	483,965			
	국 고	169,586	176,882	179,021	483,965			
	지방비	-	-	-	-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안형근 배태현		044-201-2457 044-201-246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종자생명산업과		양미희		044-201-2481			
	식품산업정책과		정찬민		044-201-2121			
	농생명·ARC사업실		김준현		031-420-6762			
	식품사업실		장제연		031-420-6771			
	첨단·가축질병사업팀		채명희		031-420-6782			
	수출·사업화팀		김민석		031-420-6791			
GSP사업운영실		김동현		031-420-6883				
신청시기	정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 획평가원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www.fris.go.kr)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지원대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기자재 생산, ICT 융복합시스템 등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전략형 상품개발기술, 수출지원 유통·검역기술 등
- 기술사업화지원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능성·전통식품, 식품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기자재·신가공 기술 개발 등

- Golden seed 프로젝트 : 20개 품목에 대한 강점기술 기반의 수출 및 수입 대체 전략 종자개발, 해외 종자수출을 위한 전주기적 R&D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진단·예방기술 개발, 검역·방역기술 개발,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의약품 개발,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등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 조기성과 창출형 미생물 유전체 핵심전략 연구, 목적지향적 유전체 연구역량 강화사업, 부처공동 Host-microbe 사업
-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 농축산물 잔류 독성성분 탐지기술, 농축산물 유통 신뢰성 강화 기술, 역매칭 시범사업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에너지절감 자재, 환경부하 저감 자재, 노동력 절감 자재 개발
-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 국가연구개발성과 후속지원, 벤처창업 바우처 지원 등
- (신규)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 모델 :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수출 시장·기술 선점을 위한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 (신규)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 향후 성장이 유망한 선도 식품분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천연물 기반의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
- (신규) 1세대스마트플랜트·애니멀팜 고도화 : 스마트팜 기술의 산업화 및 현장적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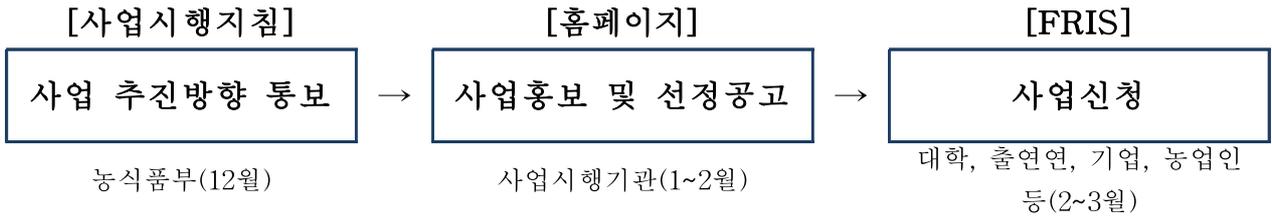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공개평가
- 참여기업 부담금(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중소기업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구과제 당 10억원 이내(연구과제 특성과 분야에 따라 초과 가능)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축산식품부·대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실시(1~2월)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신청서 접수방법 상세히 안내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fris.go.kr) 접수
 - 신청양식(연구개발계획서)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re.kr) 홈페이지에 게재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신청자는 대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 선정평가지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비중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적격성 심사(사전검토)
 -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유무,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

- 공고 시 지원자격 및 과제구성요건 부합 여부 검토
 - 공고에서 별도로 제시한 지원자격 준수
 - 지정공모과제별 제안요구서(RFP)의 과제(분야)구성요건, 연구팀 구성요건 부합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유무 검토
 - 연구책임자의 자격 준수 :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기준 충족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제한 준수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최대 5개 과제 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여부 검토
 - *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
 -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일시적으로 참여율 130%까지 계상 가능)
- 신청서류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등 제출서류 일체의 적정성 및 미비사항 검토
- 유사·중복성 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중복여부는 NTIS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선정평가 시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검토 후 평가에 반영토록 조치
- 선행기술조사
 -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요약서 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공개된 특허 및 논문의 조사·분석 실시(연구과제평가단에 분석결과 제공)

○ 선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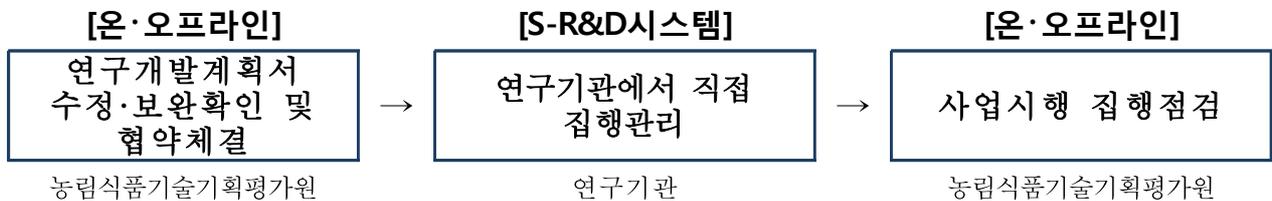
-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단에서 서면평가, 정책부합성 평가, 공개발표평가 실시(각 평가단계별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 *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 산출(정책부합성평가는 점수없이 탈락여부만 결정)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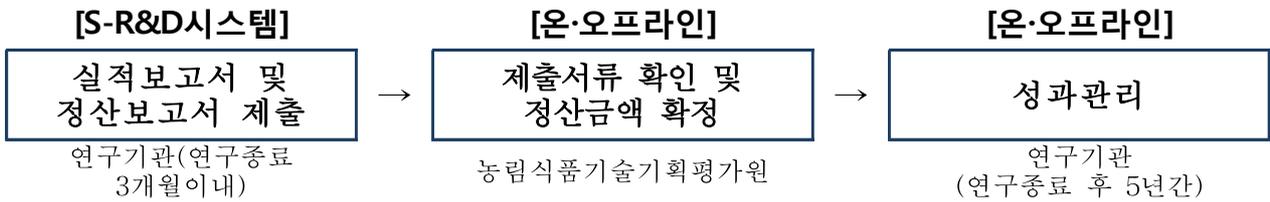
- 연구책임자 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서면평가 점수 50%와 공개발표평가 점수 50%, 가·감점을 반영하여 종합 점수 산출(서면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 점수 비중은 변동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참조
- 공고된 분야 또는 과제별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과제선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 및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보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연구비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후 증빙자료 제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전용계좌를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S-R&D)에 등록하고 연구비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연구비 집행은 S-R&D시스템에 집행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연구종료 후 5년간 보존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시로 연구비 집행내역을 모니터링하며 연구기관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집행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준수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관리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연구비 관리 교육 이수(미이수시 연구책임자 감점 조치)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적정성을 검증받은 후 사용실적보고서와 검증 결과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금액 등 정산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 연구수행기관은 정산금액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
 -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은 용도 외로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별 제재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부터 제27조의5까지 규정에 따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은 연차종료 2개월 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최종평가 실시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과 7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종료 후 3년 이내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2. 평가

- 중간평가
 - 평가결과 연구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하거나 다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인 과제는 지원 중단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정밀정산, 연구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조치
- 최종평가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정밀정산, 연구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조치
 - 연구결과가 우수한 과제(90점 이상)는 연구과제 선정 시 가점부여

※ 주요변경사항은 'Ⅱ. 주요내용'의 변경(또는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 작성

사업명	현행(2018)	변경(2019)	변경사유
농림축산식품연구 개발사업	<지원대상> ○ 신규	<지원대상> ○ (신규) 농식품수출비 즈니스전략모델구축 ○ (신규) 미래형혁신식 품기술개발 ○ (신규) 1세대 스마트 플랜트·애니멀팜산 업화기술개발	○ 신규분야 연구개발 지원